

「2024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」 및 「2024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」의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 추가모집 통합공고

< 주요 변경사항 >

	기존	변경
제외품목	대기업, 중견기업, 대형협동조합, 해외 직수입 상품 제한	해외 직수입 상품만 제한 * 동 공고에 의한 사업에 한하여 “대기업, 중견기업, 대형협동조합 상품” 지원
지원대상	소상공인	소상공인*, 중소기업** *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으로 지원 **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지원

위메프·티몬·인터파크쇼핑·AK몰·알렛츠의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·중소기업분들의 온라인시장 진출 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, 「2024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」, 「2024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」 중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통합공고 하오니, 소상공인·중소기업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4년 10월 24일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1. 사업개요

☐ 사업목적

- 위메프·티몬·인터파크쇼핑·AK몰·알렛츠의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,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마케팅 사업 지원을 통한 신속한 판로개척 지원

☐ 지원내용

구분	지원내용
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	■ 온라인쇼핑몰 입점시 발생하는 마케팅 비용 등 (붙임1 참조)

2. 신청자격

☐ 지원 대상 : 다음 ① 또는 ② 또는 ③에 해당하는 사업자

- ① 기존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'24년 선정된 기업으로서, 위메프, 티몬, 인터파크쇼핑, AK몰, 알렛츠로부터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기업
(※ 개별안내 예정)
- ② 기존 마케팅지원사업('온라인기획전' 제외)에 '24년 선정된 기업으로서, 위메프, 티몬, 인터파크쇼핑, AK몰, 알렛츠로부터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기업
- ③ 신규 신청 소상공인* 또는 중소기업**으로, 위메프, 티몬, 인터파크쇼핑, AK몰, 알렛츠로부터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

*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으로 연계하여 지원

**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연계하여 지원

- (판매대금 미정산 피해) 각 플랫폼 매출사실을 입증(증빙자료 참조)
- (중소기업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 - * 개인과세사업자, 개인면세사업자,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 가능하며, 비영리사업자, 외국법인의 본·지점,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
- (소상공인)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
 - *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(광업·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은 10인 미만)
 - ** 개인과세사업자, 개인면세사업자,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 가능하며, 비영리사업자, 외국법인의 본·지점,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

□ 지원 제외 대상 : 제외업종, 휴·폐업 및 부도 등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

< 지원 제외 대상 >

구분	내용
제외업종	•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 불가, [붙임2] 참조
	•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 불가, [붙임3] 참조
휴·폐업 및 부도	• 접수 마감일 현재 「기업의 부도, 휴·폐업」 중인 경우
세금 체납	• 국세·지방세 체납,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
불공정행위	•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
제외품목	• 해외 직수입 상품 제한* • 국내 제조 상품 이외 상품의 경우 OEM확인서 등 증빙서류 추가제출

※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·중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해, 동 공고에 의한 사업에 한하여 “대기업, 중견기업, 대형협동조합 상품” 지원

□ 제출서류 : 판판대로 기존 선정업체는 별도 제출 불필요,
신규 신청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만 해당

- 각 플랫폼 매출사실 입증*, 사업자등록증, 소상공인 확인서, 중소기업 확인서,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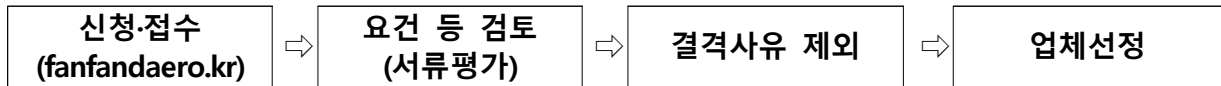
- * (위메프·티몬) 판매자 페이지의 5~8월 중 결제내역 출력물을 통해 매출 사실을 입증하고,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신청 사업자가 피해 사업자와 동일함을 확인
- ** (인터파크·AK몰) 판매자 페이지의 7~9월 중 결제내역 출력물을 통해 매출 사실을 입증하고,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신청 사업자가 피해 사업자와 동일함을 확인
- *** (알렛츠) 판매자 페이지의 7~8월 중 결제내역 출력물을 통해 매출 사실을 입증하고,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신청 사업자가 피해 사업자와 동일함을 확인

3. 신청 및 선정

□ 신청기간 : '24.8.28 ~ 수시

* 예산 소진시 공고 마감

□ 선정절차



□ 신청방법

· 판판대로 기지원(참여) 업체

☞ ① 판판대로 로그인 → ② 사업신청 → ③ 상품선택 → ④ 신청완료

· 판판대로 미지원(미참여) 업체

☞ ① 판판대로 회원가입 → ② 로그인 → ③ 상품정보 등록 → ④ 사업 신청 → ⑤ 상품선택 → ⑥ 추가 제출서류 등록 → ⑦ 신청완료

4. 문의처

구 분		전 화	이메일
소상공인	중소기업유통센터 온라인커머스팀	02-6678-9452	paamlis@sbdc.or.kr
		02-6678-9453	lya2790@sbdc.or.kr
		02-6678-9459	smk2022@sbdc.or.kr
중기업·소기업 (소상공인 제외)	중소기업유통센터 온라인판로지원팀	02-6678-9813 02-6678-9814	kte0110@sbdc.or.kr sunok2011@sbdc.or.kr

※ 사업의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예산 집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판판대로에 공지

붙임 1

플랫폼별 지원 내용 (가나다 순)

< 소상공인 : 9개 플랫폼 중 선택, 중소기업 : 4개* 플랫폼 중 선택 >

*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 : 롯데온, 우체국쇼핑몰, 11번가, G마켓/옥션

구분	플랫폼	정산주기	지원내용
1	그립	월 4회 정산 (7, 12, 20, 27일)	- 소상공인 전용 기획전 및 할인쿠폰 지원 - 광고구좌 지원 등
2	네이버쇼핑	구매확정 후 1일	- 소상공인 전용 기획전 및 할인쿠폰 지원 - 비즈쿠폰(광고비) 지급 등
3	도매꾹	배송완료 후 최소 2일 ~ 최대 30일	국내제조 상품 직매입 지원
4	롯데온	구매확정 후 1일	-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전용 기획전 및 할인쿠폰 지원 - 셀러머니(광고비) 지급 등
5	우체국 쇼핑몰	월 3회 (10일 단위)	-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전용 기획전 및 할인쿠폰 지원 - 기획전 홍보지원 (앱푸시 등)
6	쿠팡 (로켓배송)	60일 이내	소상공인 전용관 상품노출 및 할인쿠폰 지원
7	11번가	구매확정 후 2일	-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전용 기획전 및 할인쿠폰 지원 - 셀러포인트(광고비) 지급 등
8	G마켓·옥션	구매확정 후 1일	-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전용 기획전 및 할인쿠폰 지원 - e머니(광고비) 지급 등
9	H몰	월 3회 (10일 단위)	- 소상공인 전용 기획전 및 할인쿠폰 지원 - 광고구좌 지원

* 쿠팡·H몰의 경우 직매입·종합물 상품검수 절차가 있어, 미통과 사례 발생할 수 있음

** 신청 플랫폼에 따라 일부 지원 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

[붙임2]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

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

표준산업분류	업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 다만, 『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』 제2조제6호의 다단계 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 판매(업)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흥주점업
56212	무도유흥주점업
5821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단,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- 부동산관리업(6821) -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(68221) - 비주거용건물임대업(68112) 중 공유오피스,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의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 중	흥신소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
표준산업분류	업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

※ “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”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

1. 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

2. “관광진흥법”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

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일반유흥주점업(56211) 및 무도유흥주점업(56212)

3. 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

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보건업(86), 수의업(731), 법무관련 서비스업(711),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(712), 통관업(52991 중), 감정평가업(73904 중), 한약국·약국(47811 중)

<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>

재해피해 소상공인	융자허용 업종
공통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
관광특구지역 소재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일반유흥주점업(56211), 무도유흥주점업(56212)
특별재난지역 소재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보건업(86), 수의업(731), 법무 관련 서비스업(711),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(712), 통관업(52991 중), 감정평가업(73904 중), 한약국·약국(47811 중)

[붙임3]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

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

업종 분류	산업분류코드 (KSIC-10)	융자제외 업종
제조업	33402 中	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
	33409 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건설업	41 ~ 42	건설업(단,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(41225), 환경설비 건설업(41224), 조경 건설업(41226), 배관 및 냉·난방 공사업(42201), 건물용 기계·장비 설치 공사업(42202), 방음, 방진 및 내화 공사업(42203), 소방시설 공사업(42204), 전기 및 통신공사업(423)은 지원가능 업종)
도매 및 소매업	46102 中	담배 중개업
	46~47 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,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, 주류, 담배 소매업
	46331, 3	주류, 담배 도매업(단,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)
	47859 中	성인용품 판매점
	47993 中	다단계 방문판매
숙박 및 음식점업	5621	주점업
정보통신업	58 中	경마, 경륜,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,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	59142	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
정보서비스업	63999 中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,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(63999-1)
금융 및 보험업	64 ~ 66	금융 및 보험업(단,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(66199)은 지원 가능)
부동산업	68	부동산업
전문서비스업	711~2	법무,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
	7151	회사본부
수익업	731	수익업
사업 지원 서비스업	75330	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
	75999 中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
임대업	76390 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	84	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
교육서비스업	851~854	초·중·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
	855~856 中	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
보건업	86	보건업 (단,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)
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	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	9124	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	91291	무도장 운영업
협회 및 단체	94	협회 및 단체 (단, 「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」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)

업종 분류	산업분류코드 (KSIC-10)	용자제외 업종
기타 개인 서비스업	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
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	97 ~ 98	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
국제 및 외국기관	99	국제 및 외국기관

*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용자 제외

** 「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」에 따른 소상공인은 용자 제외

□ 용자제외 대상 업종 운용의 예외

○ 사회적경제기업 : 보건업(86) 영위기업 지원 허용

* 예비사회적기업,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, 소셜벤처

○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기업 : 아래 업종은 소상공인 지원 허용

- 호텔업(55101) 중 관광숙박업,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(55109),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(85614), 자동차 임대업(76110),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(91210), 기타 오락장 운영업(91229), 수상오락 서비스업(9123), 산업용 세탁업(96911), 세탁물공급업(96913)